

의안 번호	2347	【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제출 일자 : 2024. 11. 8.(금)
- 제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11. 8.(금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12. 4.(수)

2. 제안이유

- 체계적인 환경정책의 수립·추진을 위해 ‘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정책위원회’의 기능을 ‘울산광역시 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’가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개정 내용에 맞게 조 제목 변경(안 제9조)
-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울산광역시 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수정(안 제9조제2항)
-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(안 제9조제3항 ~ 제4항, 안 제10조 ~ 제15조)

4. 근거법규

-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58조
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2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」 제10조

5. 검토의견

-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의한 환경정책위원회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에 의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

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임.

- 환경정책위원회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, 녹색성장, 환경 보전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, 우리 구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·폐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근거법규

「환경정책기본법」

제58조(환경정책위원회)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·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1의2.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에 관한 사항
2. 환경기준·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
3.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4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·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
5.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
6. 「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」 제5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
7.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·검사발전 기본계획 등 환경시험·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
8. 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, 제10조제1항 및 제2항, 제12조제3항,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, 재질·구조의 개선, 재활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
8의2.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
8의3. 「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환경정책·자연환경·기후대기·물·상하수도·자연순환·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

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시·군·구 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,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·자연환경·기후대기·물·상하수도·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제2항에 따른 시·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·군·구환

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」

제22조(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
③ 지방위원회의 구성,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, 청년, 여성, 노동자, 농어민, 중소기업인,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「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」

제10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2.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
3. 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
4.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
5.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·행정계획에 관한 사항
6. 제23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